

2001년도 산업기반기금 지원 안내

(지식기반제조업 발전 중 항공우주 부문)

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산업기반기금운용·관리요령(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-16호, 2001. 2. 9)에 의거 2001년도 제1차 산업기반기금(지식기반 산업 발전 사업중 지식기반제조업 발전 중 항공우주 분야)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2001년 2월 15일

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
회장 임 인 택

1. 지원조건

- 가. 지원 규모 : 12,000백만원
- 나. 용 자 금 리 : 년 60%(변동금리, 담보대출)
- 다. 용 자 기 간 : 8년 (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)
- 라. 동일인 한도 : 20억원 이내(다만,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지원 가능)
- 마. 운 전 자 금 : 지원액의 40% 이내
- 바. 용 자 비 율 : 소요자금의 100% 이내

2. 용자대상 및 지원내용

항공우주 지식기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시설개체 및 신축, 시설자동화, 공정설치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제품개발비(재료구입비, 시험검사비, 위탁연구비 포함),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운전자금

3. 용자신청기간 : 2001년 3월 20일한

- 1차 : 2001년 3월 20일 한
- 2차 : 2001년 5월 31일 한
- 3차 : 2001년 8월 31일 한
- ※ 2, 3차 일정은 본회 사정 및 지원규모(12,000백만원) 전액 추천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4. 용자취급은행

산업기반기금 관리은행인 중소기업은행 및 동은행과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산업은행, 국민은행 등 23개 금융기관(시중 및 지방은행 포함)

5. 구비서류

- 가. 산업기반기금 용자신청서 (소정양식) 1부.
- 나. 사업계획서 (소정양식) 1부.
- 다. 전기분 재무제표확인원(세무서 확인본) 1부.
- 라.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.
- 마. 기타 구비서류
 - 동일인 한도 초과시 초과사유서 1부.
 - 용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. (항공우주 사업 신고서 등)
 - 용자대상 시설 구매계약서 또는 견적서, 이와 동등한 서류 각 1부.

6. 용자사업자 선정기준

- 가.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본회에서 구성한

운용심의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함.

- 사업의 목표, 내용, 수행방법 및 타당성
- 설치시설의 중요도
- 생산성 향상도
-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
- 담보능력 등 실제 대출 가능성
- 기타 산업기반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정한 내용

7. 용자대상 사업자 선정방법

협회장은 신청마감후 30일 이내에 신청된 사업을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규모 범위내에서 용자대상사업자를 선정한다.

8. 용자절차

- 가. 용자사업자는 협회장의 사업자확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나. 협회장은 “가”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(수입시설의 도입, 토목·건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수행 등)로 인하여 대출기한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2회에 한하여 4개월의 범위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단, 용자사업자가 대출완료기한 연장을 희망할 경우 대출완료기한 이전에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9. 사후관리

- 가. 용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) 사업진도보고서 (6개월 경과후, 계속사업의 경우 매 1년 경과후)
 - 2) 사업완료보고서 (사업완료후 3개월 이내)
 - 3)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회장이 요청하는 자료
- 나. 용자사업자는 기금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업체

현황 (대표자, 상호, 전화번호, 주소 등)이 변경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0. 목적의 사용금지

- 용자사업자는 그 용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

11. 수수료 징수

- 용자사업자는 기금추천통보시 기금사업 지원금액의 0.15% 수수료를 협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50%를 반환받을 수 있다.

12. 접수 및 문의처

-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관리부 총무과로 문의 바랍니다.
 - 주 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-1번지 전경련회관 6층 (우)150-756
 - 전화 : (02) 761-1106, Fax : (02) 761-1175
- ◎ 인터넷 안내 : <http://www.aerospace.or.kr>
→ 공지사항
- ※ 용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, 산업발전기금 운용규정 및 관리요령은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☎